



國際

動向



モナコ ヘイグ協定條例批准

WIPO 事務總長이 네덜란드政府로부터 받은情報에 의하면 모나코政府는 國際工業意匠寄託에 관한 헤이그協定(1925. 11. 6)의 헤이그條例(1960. 11. 28)의 批准書를 1981年 10月 13日寄託했다.

위 헤이그條例의 發效日은 同 헤이그協定의 26條(1)에 따라 必要批准國充足數에 달하면 公告될 것이다.

1982. 11. 18 헤이그告示 No. 17
(WIPO 提供)

이탈리아

니스協定제네바條例批准

이탈리아政府는 1967年 7月 14日 스톡홀름에서 改正된 標章登錄目的을 위한 國際商品 및 서비스分類에 관한 니스協定(1957. 6. 6. 15)의 제네바條例(1977. 5. 13)의 批准書를 1982年 11月 18日寄託했다.

니스協定 제네바條例는 이탈리아에 대하여 1983年 2月 19日에 發效한다.

1982. 11. 19, 니스告示 No. 501
(WIPO 提供)

國際工業所有權教育研究振興協會 (ATRIP) 2次總會

—1982. 9. 20~21, 제네바서—

國際工業所有權教育研究振興協會(ATRIP)는 1982年 9月에 WIPO本部에서 年例모임과 2次

總會를 가졌다. WIPO가 會議施設과 開途國의 몇몇 會員의 旅費를 包含한 財政支援을 하였다. WIPO職員 3名을 包含하여 92名의 教授와 研究者들, ATRIP 會員들이 이 모임에 參加하였다.

ATRI 總會는 同協會의 事業活動과 會計報告書를 承認하였으며 會員이 1981年 6月에 69名에서 1982年 9月에는 17個開途國을 包含 39個國의 187名으로 增加한데 대한 滿足을 表明하였다. 또한 同總會는 執行委員會가 提案한 1983年度 事業活動計劃 및 豫算案을 承認했다.

이 執行委員會案에서는 특히 工業所有權에 있어서의 教育研究의 役割과 教授장학금, 오리엔테이션計劃의 相互交流 및 學術研究結果의 保護와 利用의 問題에 관한 實務委員會의 設置에 관한 決議文의 準備를 다루고 있다.

各其 다른 會員이 의장이 된 實務會議와 위크숍에서는 開途國에서의 工業所有權法教育의 最近動向과 展望을 檢討하고 工業所有權法發展에 대한 教育研究의 영향과 特許와 技術, 著作權 및 인접權利의 移轉을 包含한 一定問題에 있어서의 最近動向報告를 들었다.

執行委員會는 1983年 年例모임을 뉴욕에서 열기로 合議했다.

(WIPO 提供)

W I P O 工業所有權 開發協力 常設委員會

—1982. 9. 27~30, 제네바서 8次總會

WIPO 工業所有權 開發協力常設委員會는 1982年 9月 27~30日에 제네바에서 8次會議를 가졌다. 이 會議에는 同 常設委員會 57個會員國,



國際

動向



10個非會員國, 4個政府間機構 및 8個非政間機構가 參席했는 데 韓國에서는 車相弼·前特許廳次長, 李培雨 金屬審查擔當官, 김시 형제네바駐在 商務官이 參席하였다.

常設委員會은 事務總長에게 會員希望通知를 한 모든 WIPO 會員國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리스와 소말리는 1982年 8月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필리핀은 1982年 9月에 會員國이 되었으며 이로써 會員國은 모두 75個國이 되었다.

承認된 WIPO 豫算에 포함되어 있는 特別規程에 따라 常設委員會 會員으로서 低開發國에 속한다고 看做되는 國家로부터 會議에 參加하는 各代表者 1名씩에 대해서는 旅費와 經費가 지급되었다.

常設委員會는 지난 會議以來의 事業活動繼續事業 및 未來事業計劃을 WIPO執行機構가 承認한 年度 關係프로그램과 豫算項目에 根據해서 檢討했다.

몇몇 代表者들이 내놓은 提案을 適切히 檢討한 후에 常設委員會는 教育分野와 立法 및 行政機構의 設置나 強化分野에 있어서 WIPO의 開發協力活動에 滿足을 表明했다. 또한 常設委員會는 WIPO執行機構로 하여금 工業所有權分野에서의 開發協力計劃의 必要性과 財源과의 關聯에 주의를 환기시키기로 決議하고 WIPO 事務總長에게 WIPO가 工業所有權分野에서의 開途國의 必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豫算案을 수립할 때에 그러한 關聯을 출일 수 있는 亂措置를 講究하도록 권유했다. 더우기 常設委員會는 WIPO가 工業所有權에 關聯한 國際開發協力を 위해 可用한 여러가지 財源의 活用

을 組織化하여 調和를 이루는데 一定한 役割을 해야한다고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常設委員會 事務總長에게 行政및 豫算問題의 관점에서 每年 常設委員會의 開催可能性을 檢討하도록 권유했다.

常設委員會는 또 提案들을 檢討한 결과 商標分野, 開途國에서의 企業의 工業所有權活動, 辦理士職業 및 特許文獻에 包含된 技術情報에의 接近등의 分野를 包含하여 經濟와 社會開發을 위한 開途國의 工業所有權制度의 效果的利用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의 WIPO의 活動 및 未來計劃에 滿足을 表明했으며 開途國間의 發明技術革新과 協力의 增進을 위한 WIPO의 活動 및 未來計劃에도 滿足을 表明했다. 特許文獻에 포함된 技術情報에 開途國이 쉽게 接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WIPO計劃에 函疊하여 常設委員會는 事務同計劃이 開途國에 갖는 重要性과 有用性을 充分히 反映하도록 方針을 規定하고 同計劃을 檢討할 수 있도록 하는 解決方案을 모색하려는 事務總長의 意圖를 주목했다.

常設委員會는 또한 國際事務局이 提案한 發明審查를 위한 國際協力制度設立推進 ICSET節次도 承認했다. 몇몇 代表者들은 그러한 制度設立을 위한 準備作業에 參與하거나 그러한 制度에 協力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常設委員會는 同計劃의 一貫性, 繼續性, 質等을 確保하기 위한 中期開發協力活動計劃을 고양시키는데 있어서의 國際事務局의 노력에 滿足을 表明되고 中期計劃은 다음 會議의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決定했다.

(WIPO提供)